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1213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4. 7.

판 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 농림축수특산물, 한방약초, 더덕, 식물재배, 유실수, 임산물, 농산물 집단 재배·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17. [redacted]군 B 목장용지 3,124㎡, C 목장용지 893㎡, D 임야 8,359㎡, E 임야 12,325㎡, F 임야 3,47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7.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8,843,140원, 지방교육세 15,850,350원, 농어촌특별세 10,482,10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면서 이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뒤 이 법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7구합273호), 그 판결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누1478호]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두59806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발견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18. 10. 25.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 ○ **결정(경정) 청구 사유**
>
> 2014. [redacted]군 소재 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고, 자경농민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하였음. 이후 2016.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여 수시분 결정 통지 하였음. 이후 2018.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발견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 **결정·경정 결과**
>
> ▶ **결정 결과: 불가**
>
> ▶ **불가 사유:**
>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제1항,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청구인께서 주장에 따른 수시분 고지서를 결정 통지받은 날이 2016. 2. 15.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으며, 처분서 중 취득세 원인에 관하여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승계취득이라 주장하나 이에 정당한 사유나 근거가 없는바 귀하의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redacted]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6. 각하되었고, 결정서는 2019. 3.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15-1 내지 15-5,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승계취득하였음에도 유상취득을 취득원인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의 법문 및 경정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규정상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이미 관련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같은 이유로 재차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나.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1)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의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별도 추징 요건이 충족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행정청은 이 사건 각 처분시에는 추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해야 한다.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애초의 신고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각 처분의 성격,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하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를 경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 역시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을 불문하고 신고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애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 과세관청에 대하여 조세채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기간과 관련하여,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부분이 아닌 당초 신고분에 관하여 납세자가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도입 시기와 개정 연혁,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익을 위하여 국세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그리고 그와 별개의 불복수단인 납세신고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병행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경정청구기간이 남아있는 도중 과세관청의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 결정이다), 그 결정·경정이 당초의 결정·경정과 독립된 것인지, 또는 결정·경정에 대하여 불복할 절차적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불문하고 납세자가 애초의 신고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모두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18. 8. 31.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을 준수하였다. 피고인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다.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지방세 면제분 추징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소송 대상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은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소송 대상이므로 그 주된 판단 대상과 법적 효과가 다르다. 전소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3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30.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G는 위 각 토지의 양도 원인을 '매매계약'으로 표시하였다. 원고는 그 내심의 의사와 관계 없이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유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신고를 대행한 법무사 H의 사무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49억 5,000만 원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듣자 실질적 가격을 문의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금지행위, 신고내용의 검증, 신고내용의 조사, 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G의 대리인 I는 호텔과 관련된 손해금으로 매매대금 입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와 G의 각 대표이사 역시 사무원에게 이를 확인하여주었다. 위 사무원은 무상승계취득에 관하여는 상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취득세 신고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G는 G가 J 등과의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49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는 것이다. 가치 산정의 경위가 그와 같았던 이상, 원고와 G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내지 공시가격과 당사자간 산정한 가격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토지 가액을 4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G가 각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K 호텔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등을 고려하면 그 가격 산정이 원고가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장하는 것과 같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 공시지가가 어떠했는가는 위 법률행위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원고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원인을 무상취득으로 하든 유상취득으로 하든 상관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대리인 I, G와 원고의 각 대표이사들은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고가 취득 가액 49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G와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들이 모두 I 및 L의 친족 또는 지인으로 임명되는 등 위 두 회사가 사실상 I와 L에 의하여 경영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별개 법인인 G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경료행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모두 가장행위이이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상양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절차, 행정청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취득하였으므로, 나아가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비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제10조 제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과 관계 없이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제1호),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제2호),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신고에 따라 49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가치 산정에 매매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재판장 판사 조정래

판사 고철만

판사 정종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별지1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내역

	법정신고일	2014-08-30		최초신고일	2014-07-15	
경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감면액	납부세액
	(취득)세	당초신고	4,950,000,000	173,850,630	173,850,630	0
		경정 또는 경정신고	77,940,430	2,727,915	2,727,915	0
		증 감 액	4,872,059,570	171,122,715	171,122,715	0
	(농어촌특별)세	당초신고	173,850,630	34,770,110	34,770,110	0
		경정 또는 경정신고	2,727,915	545,580	545,580	0
		증 감 액	171,122,715	34,224,530	34,224,530	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별지2

관계 규정의 표시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끝.